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365

발의연월일: 2024. 7. 30.

발 의 자:이해민·차규근·박은정

황운하 · 서왕진 · 신장식

김준형 · 강경숙 · 조 국

정춘생 · 장종태 · 송재봉

김남근 • 이상식 • 김우영

김선민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사회 환경 변화에 따라 온라인플랫폼은 소비자와 생산자를 연결하고 상호작용하며 국민 생활에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포털, 메신저, 동영상, 온라인상거래, 배달중계, 모빌리티 중계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일부 온라인플랫폼의 영향력이 현저하게 증대되고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의존도도 높아지면서 경제적·사회적 부작용도 함께 커지고 있는 상황임.

대형 온라인플랫폼 기업들은 과도한 이용자 정보 수집, 서비스 알고리즘의 불투명한 적용, 약탈적 가격설정, 온라인플랫폼 이용자에 대한불공정 행위를 통해 영향력을 확대한 후, 이를 기반으로 온라인플랫폼을 이용하는 이용자와 사업자에 대해 일방적으로 요금 및 수수료를

인상하는 등 이용조건을 변경하거나 이용자 보호조치 없이 서비스를 해지·중지하는 등 국민 피해를 야기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부가통신사업자인 온라인플랫폼의 일방적 요금· 수수료 인상, 서비스 해지·중지, 민원처리 등에 대한 법적 규율은 미 비해 이용자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서비스 이용조건 및 대가, 이용조건 변경 시 사유 및 절차, 해지나 서비스 제한의 절차 및 요건, 이용자의 이의제기 및 피해구제 의 기준을 갖추어 서비스의 이용약관을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자 함(안 제28조의2 신설).

이와 함께 신고된 이용약관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약관에 포함해야 할 사항의 적정성 여부 등을 평가하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선사항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ICT 시장환경의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3 신설등).

법률 제 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 및 제2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8조의2(부가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의 신고 등) ① 매출액, 이용자수, 시장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서비스별로 이용약관을 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 ② 이용약관에는 서비스 이용 조건 및 대가, 이용약관의 변경 사유 및 절차, 해지나 서비스 제한의 절차 및 요건, 이용자의 이의제기 및 피해구제의 기준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8조의3(이용약관의 평가 및 개선권고)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은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된 이용약관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가통신사업자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 1. 이 법에 따라 이용약관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적정하게 정하고 있는지 여부
- 2. 이용약관을 이용자가 알기 쉽게 작성하였는지 여부
- 3. 이용약관을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및 개선권고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 ③ 이용약관의 평가 대상, 기준 및 절차, 평가결과 및 개선권고 사항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7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28조의2(부가통신사업자의 이
	용약관의 신고 등) ① 매출액,
	이용자 수, 시장점유율 등이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
	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전기
	통신서비스별로 이용약관을 정
	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에게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u>야 한다.</u>
	② 이용약관에는 서비스 이용
	조건 및 대가, 이용약관의 변경
	사유 및 절차, 해지나 서비스
	제한의 절차 및 요건, 이용자의
	이의제기 및 피해구제의 기준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u>다.</u>
<신 설>	제28조의3(이용약관의 평가 및
	개선권고) ① 과학기술정보통

함하여야 할 사항을 적정하게 정하고 있는지 여부

2. 이용약관을 이용자가 알기 쉽게 작성하였는지 여부

3. 이용약관을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 개하고 있는지 여부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및 개선권고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이용약관의 평가 대상, 기준 및 절차, 평가결과 및 개선권고사항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할 수 있다.

신부장관은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된 이용약관에 관하

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

하고, 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가통신사업자에게 개선을 권

1. 이 법에 따라 이용약관에 포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u><신 설></u>	6의2.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한 자
7. (생 략)	7. (현행과 같음)